
군산 도시계획시설(생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근린공원 1개소 -

202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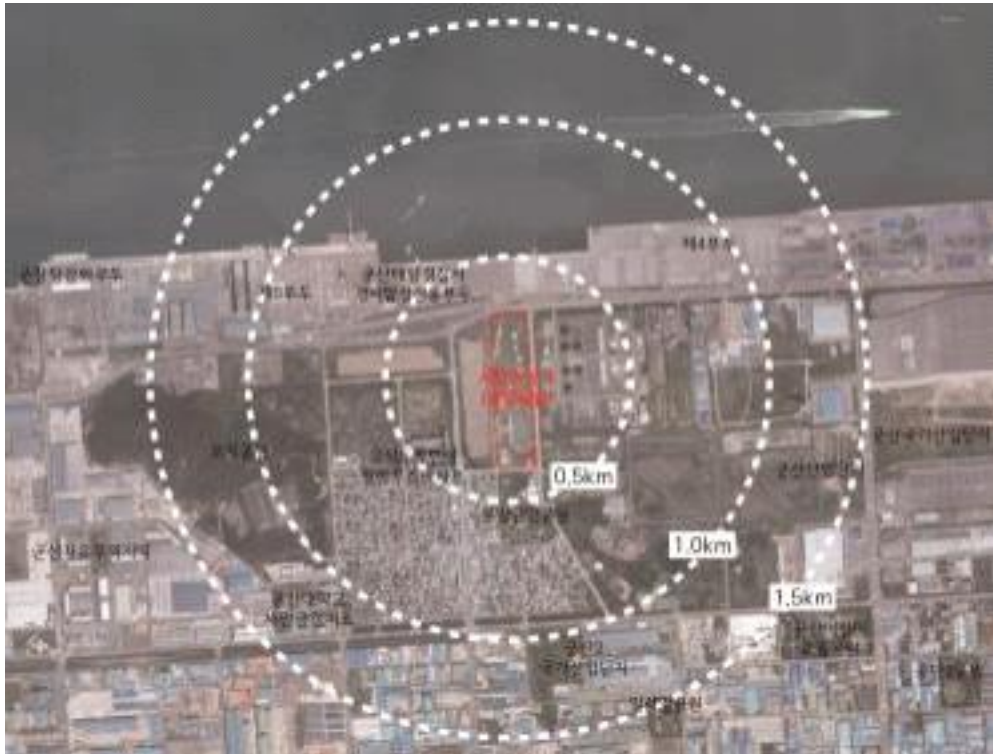


군 산 시

도시계획시설(생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 군산산업단지 내 기 도시계획결정된 근린공원 1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자 함
- ◆ 생말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부족한 운동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위 치 도



□ 입안내용

- 위 치 : 군산시 오식도동 508번지 일원
- 대상공원 : 생말공원 1개소
- 면 적 : 108,650㎡
- 입안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생말(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사항

- 1991. 12. 7. : 군산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 2004. 6. 17. : 군산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
- 게스트하우스 위치 변경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
- 2004. 12. 2. : 군산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체육진흥과 추진]

- 2023. 3. : 생말공원내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계획 보고
- 2023. 5. : 군산시의회 간담회(행복위)
- 2023. 10. : 체육진흥시설 지원(전환사업)선정(도비 750백만원 확보)
- 2023. 2. : 생말파크골프장 설계용역 착수

검토사항

- 생말체육공원은 기존 청소년부터 중년을 위한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노년층을 위한 체육시설은 부재한 상황, 이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도입
- 생말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이하 도시공원법) 제16조에 따라 조성계획 수립

공원조성방향

- 지역주민 및 주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운동공간 및 문화공간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

추진계획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24. 6.
※ 조성계획 세부조서 및 도면 별첨

나. 이용 현황

- 인근 주택단지 거주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여가·체육·휴게 등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산업단지 쇠퇴로 인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지는 않음
- 운동시설과 평지형태의 산책로가 어우러져 있으며, 공원 동측 산업단지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음

<내부 산책로>



<광장 및 휴게시설>

<내부 산책로2>



<광장 및 휴게시설2>



<공원 내 운동시설>



<주차장>



다. 관련법규 검토

○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구분	관련 내용	비고
법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p>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p>	
법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p>① <u>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p> <p>② <u>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항을 준용한다.</u>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u>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 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u> 2. <u>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p>④ <u>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	

○ 용어정의 및 공원시설의 종류

구 분	관 련 내 용	비 고
<p>법 제2조 (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	종 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3. 유희시설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키 시설 또는 유키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 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정한다), 학생기숙사(「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민속놀이마당, 정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6. 편의시설	가.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나. 유스호스텔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7. 공원관리시설	창고·차고·계시관·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8. 도시농업시설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9. 그 밖의 시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다. 동물놀이터 라.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에 따른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다. 종합분석 및 조성방향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검토결과
입 지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산업단지 중심부에 입지하며 공원 서측과 남측으로 주택단지, 동측으로는 공업단지 남측으로는 분말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단지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근린공원임
지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공원 특성상 대부분 평탄한 지형이나 녹지의 경우 구릉지가 형성되어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탄한 지형으로 근린공원이 입지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토 지 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오식도공원 ~ 생말공원 ~ 분말근린공원 ~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 내초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업단지 내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음
공 원 이 용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주택단지 거주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여가·체육·휴게 등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산업단지 쇠퇴로 인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하여 공원의 이용을 증진시키는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음
관 련 법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 도시공원(근린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권한은 군산시장에게 위임

2. 기본구상(안)

<개발방향>

- 생말체육공원은 기존 청소년부터 중년을 위한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노년층을 위한 체육시설은 부재한 상황, 이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도입
- 파크골프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향되고, 하천이나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도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트렌드에 맞는 파크골프장 도입
- 기존 수림대와 굴곡이 있는 지형을 활용하여 인공적인 조성방식이 아닌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파크골프장 이미지 확보

<기본계획(안)>

- 18홀, 1,204m의 기존 수림대와 지형을 활용한 친환경 파크골프장 도입



■ 코스제원표

홀번호	거리	PAR	면적(m ²)			Bunker		비고
			Green	Tee	Fairway	개수	면적(m ²)	
A1	79	4	70	4	354	1	24	
A2	74	4	60	4	454	3	31	
A3	54	3	61	4	227	-	-	
A4	40	3	56	4	173	-	-	
A5	115	5	65	4	602	3	40	
A6	64	4	63	4	327	1	21	
A7	41	3	64	4	239	1	11	
A8	67	4	58	4	358	1	14	
A9	59	3	64	4	270	2	51	
소계	593	33	561	36	3,004	12	192	

B1	116	5	50	4	564	3	54	
B2	51	3	68	4	232	2	33	
B3	72	4	55	4	308	-	-	
B4	77	4	66	4	382	1	20	
B5	47	3	65	4	201	-	-	
B6	58	3	69	4	253	-	-	
B7	78	4	66	4	361	1	10	
B8	45	3	59	4	169	2	22	
B9	67	4	66	4	292	-	-	
소계	611	33	564	36	2,762	11	139	
총계	1,204	66	1,125	72	5,766	12	331	

3. 조성계획(안)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생말공원	체육공원	오식도동 508공	108,650	-	108,650	91. 12. 07	

나. 생말공원 조성계획(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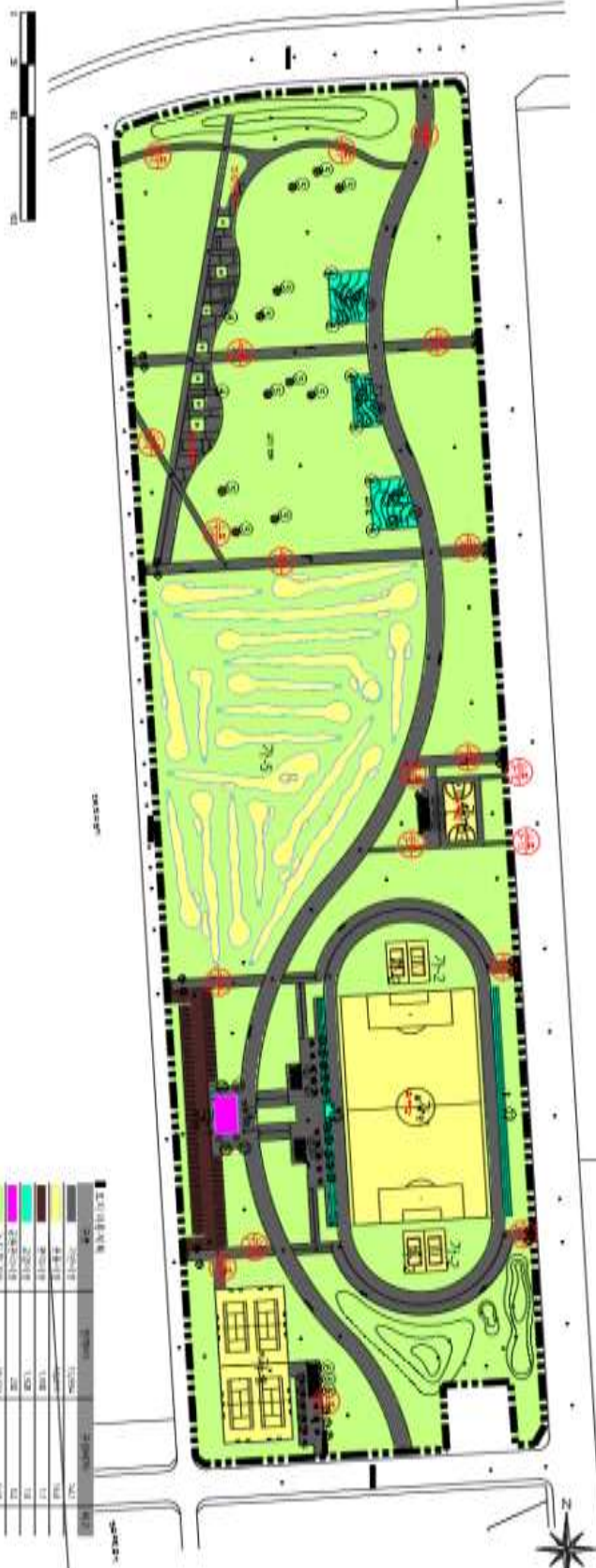
다. 생말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08,650	38,935	90.72	90.72	222	108,650	38,592	90.72	90.72	192		
기반 시설	소계	20,105	20,105			-	15,994	15,994			-	감)4,111㎡
	도로	13,161	13,161	-	-	-	9,050	9,050	-	-	-	감)4,111㎡
	광장	6,944	6,944	-	-	-	6,944	6,944	-	-	-	-
조경시설	-	-	-	-	40	-	-	-	-	29	-	
휴양시설	-	-	-	-	107	-	-	-	-	104	-	
유희시설	1,119	1,119	-	-	8	-	-	-	-	-	-	감)1,119㎡
운동시설	12,623	12,623	-	-	4	18,211	18,211	-	-	-	-	증)5,588㎡
교양시설	2,994	2,994	-	-	-	2,293	2,293	-	-	-	-	감)701㎡
편익시설	1,892	1,892	-	-	10	1,892	1,892	-	-	6	-	
관리시설	202	202	90.72	90.72	53	202	202	90.72	90.72	53	-	
녹지	69,715	-	-	-	-	70,058	-	-	-	-	-	증)343㎡
공원시설율 (법정 50%)		35.84					35.52					감)0.32%
공원녹지율 (법정 50%)		64.16					64.48					증)0.32%

[제23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안)도]

변경

조성계획총괄도 (S=1/100)



구분	구호	구명	면적(㎡)	비율(%)	구분	구호	구명	면적(㎡)	비율(%)
기타시설	1001	관리사무소	1,000	0.1	기타시설	1001	관리사무소	1,000	0.1
	1002	휴게장	2,000	0.2		1002	휴게장	2,000	0.2
	1003	야구장	10,000	1.0		1003	야구장	10,000	1.0
	1004	축구장	10,000	1.0		1004	축구장	10,000	1.0
	1005	어린이놀이터	5,000	0.5		1005	어린이놀이터	5,000	0.5
	1006	노년놀이터	5,000	0.5		1006	노년놀이터	5,000	0.5
	1007	수목장	10,000	1.0		1007	수목장	10,000	1.0
	1008	수목장	10,000	1.0		1008	수목장	10,000	1.0
	1009	수목장	10,000	1.0		1009	수목장	10,000	1.0
	1010	수목장	10,000	1.0		1010	수목장	10,000	1.0
기타시설	1011	수목장	10,000	1.0	기타시설	1011	수목장	10,000	1.0
	1012	수목장	10,000	1.0		1012	수목장	10,000	1.0
	1013	수목장	10,000	1.0		1013	수목장	10,000	1.0
	1014	수목장	10,000	1.0		1014	수목장	10,000	1.0
	1015	수목장	10,000	1.0		1015	수목장	10,000	1.0
	1016	수목장	10,000	1.0		1016	수목장	10,000	1.0
	1017	수목장	10,000	1.0		1017	수목장	10,000	1.0
	1018	수목장	10,000	1.0		1018	수목장	10,000	1.0
	1019	수목장	10,000	1.0		1019	수목장	10,000	1.0
	1020	수목장	10,000	1.0		1020	수목장	10,000	1.0